



의안번호	제 2021 - 8호
보 고 연 월 일	2021. 3. 29. (제10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39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2
1. 유형 분류	2
2. 권고 형량범위	3
3. 양형인자	5
III.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24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4
2. 권고 형량범위	25
3. 양형인자	26
4. 집행유예 기준	39
5. 기타	41
IV.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43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43
2. 형량 범위	47
3. 양형기준 수정안에 기재된 양형인자 관련	48
4. 양형기준 수정안에 기재되지 않은 양형인자 추가 관련	57
5. 기타(양형인자의 정의 수정)	62
6. 집행유예 기준	63
V. 향후 일정	64

【별첨】

- 이재신,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최성국, 유관모, “주거침입, 환경,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공청회·의견조회 결과 검토”
 - 이재신,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백광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I. 제139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1. 3. 29.(월) 15:00 ~ 18:4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2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범현, 유관모, 이재신, 이형일, 최성국,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강수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I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 유형 분류

가. 범죄유형 추가

(1) 의견 요지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 등 범죄 목적 주거침입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일반인의 관심 대상인 범죄유형을 주거침입범죄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양형기준안에 의할 때, 범죄 목적 주거침입의 경우 ① 목적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고, ② 목적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 양형기준안에 따르더라도 단순 주거침입에 비하여 범죄 목적 주거침입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나. 소유형 분류

(1) 의견 요지

공동주거침입은 현장에 다수인이 나타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소유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공동주거침입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양형기준안 설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음

- 폭력범죄, 손괴범죄의 경우 공동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 전례가 있는 점, 양형통계를 살펴볼 때 일반주거침입과 공동주거침입 사이에 평균형량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거침입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선고형 결정 시 참조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이 타당함

2. 권고 형량범위

가. 규범적 조정 필요

(1) 의견 요지

이번 양형기준안에서 일반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 규범적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음. 최근의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등과 관련된 일반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규범적 조정을 거쳐서 이번 주거침입죄의 권고 형량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함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양형기준상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높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퇴거불응 및 주거신체수색 유형은 양형통계상 최고형량(퇴거불응: 1년, 주거신체수색: 6월)을 고려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그 상한을 1년6월, 2년으로 각 설정함
 - 특수주거침입,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양형통계상 최고형량은 1년6월, 2년이나, '01. 일반적 기준'의 주거침입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2년인 점 등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함 ⇒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2년6월,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3년으로 각 설정함
- 다른 소유형의 경우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 양형통계와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 자체에 대하여 규범적 조정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특별가중인자를 규정하여 범죄 목적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나. 주거신체수색 권고 형량범위 상향

(1) 의견 요지

- ① 주거신체수색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주거침입보다 낮고 퇴거불응과 같은 것은 지나치게 경험적 접근 방식에 전착한 태도이므로,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 및 죄질, 신체의 자유 등 보호 필요성 등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상향할 필요 있음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 ②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 통계분석의 기초가 된 사건 수가 미미한 점 등 고려하여, 신체수색의 경우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형량을 상향할 필요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 ③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 불법의 정도 등 고려하여,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야 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권고 형량범위는 양형기준안 의결 시 양형통계와 법정형을 적절히 반영하여 설정한 것임
 -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에 따른 형량범위에 이미 규범적 조정을 가함
- 신체 등 수색의 대상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형인자를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안 의결 시 충분히 검토됨
 - 수색의 대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인자 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가중인자 또는 감경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1) 의견 요지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소유형 3 누범특수주거침입의 기본영역 하한이 법정형(1년 이상 12년 이하) 하한보다 낮게 설정되었고,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모든 소유형의 가중영역 모두 법정형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형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안 의결 시 양형통계와 법정형을 적절히 반영하여 설정한 것임
 - 법정형의 하한보다는 낮으나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하한보다는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음
 -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조정할 경우 각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감안하면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1)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 의견 요지

[정의 규정 수정]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라 할지라도 사실상 평온의 침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실내 사무실 공간’ 이나 ‘선박의 객실’, ‘호텔의 객실’ 은 실내 주거공간에 준하여 취급할 수도 있음. ‘실내 주거공간’ 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실내공간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②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는 기수시기에 관한 학계의 견해 등을 참조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인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 및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로 세분하거나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 를 일반감경인자로 고려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③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는 범행 조기 종료

유인 제공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인바,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한 경우’ 또는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로 완화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감경 인자 삭제]

④ 피해자의 인식, 사람의 현존 유무, 실내 주거공간 이외 장소를 감경 기준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사생활의 평온)을 고려할 때 위 요소들이 불법성을 감경하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감경 인자 신설]

⑤ ‘복수의 주거자 중 일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특수주거침입 등에서 단체 또는 다중 가운데 1인이 침입한 때나 위험한 물건을 처음부터 휴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를 감경 인자로 신설할 필요 있음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을 ‘실내 주거공간 (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수정(의견 요지 ① 관련)
 - 실내 주거공간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실내공간의 경우 주거침입에 따른 범익침해의 정도 역시 유사하다고 보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을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와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세분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

련)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신체 일부의 침입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㉔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를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로 완화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③ 관련) ⇨ **의견 불일치**

㉕ 제1 의견(6인) :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로 변경

- 어떠한 사유로든지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다면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범행 발각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음
- 기존 정의 규정에 따르면, 범행 발각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거한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㉖ 제2 의견(5인)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현행 양형기준안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 ‘곧바로 퇴거’라는 표현은 행위자의 자발적인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임. 이 부분을 삭제하면, 스스로 퇴거한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에 의하여 쫓겨나는 경우에도 체류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생김

- 어떠한 경위로든지 체류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감경인자 적용을 받게 되면 과도하게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므로,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함

- ㉠ 피해자의 인식, 사람의 현존 유무, 실내 주거공간 이외 장소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인자를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④ 관련)
 - 실제 사례에서 추출한 양형요소이고, 주거침입범죄의 보호법익, 침해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함
 - 한편 정의규정 중 피해자의 인식과 관련된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주거침입범죄 일반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범죄 중 신체 일부 침입 사안에 한하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함
 -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주거의 평온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감경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 '복수의 주거자 중 일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특수 주거침입 등에서 단체 또는 다중 가운데 1인이 침입한 때나 위험한 물건을 처음부터 휴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경 인자로 신설할지 여부(의견 요지 ⑤ 관련)
 - 복수의 주거자 중 일부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

적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하나로 반영하기는 어려움

- 다만 주거에 들어간 목적 등 사안에 따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특수주거침입) 또는 특별가중인자(특수주거침입 제외)에 해당하는바, 특수주거침입의 구성요건 해석, 가벌성 등에 비추어 1인만이 침입한 때나 처음부터 휴대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는 어려움

(2)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 의견 요지

주거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를 구별할 필요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를 삭제함이 타당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주거침입범죄 역시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비하여 행위불법이 가볍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과거 자신이 출입하던 타인 주거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하여 타인 주거에 들어가거나 쟁의행위를 위하여 사무실에 진입하는 등 주로 주거를 간수하는 자의 추정적 승낙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있으

므로,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3)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있음), 만취상태 서술식 기준

(가) 의견 요지

- 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야기하지 않은,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 으로 수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야기한, 유발한) 심신미약’ 으로 수정 (대한변호사협회)
- ②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중 ②항과 관련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 를 ‘음주나 약물을 할 당시에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고 ~’ 로 수정 (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기존 양형기준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함
-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해석론에 관하여 음주 당시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이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지 과실범으로 처벌하는지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논의가 있는데, 의견 요지 ②와 같이 수정할 경우에는 자칫 특정한 해석으로 양형기준이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나. 특별가중인자

(1)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가) 의견 요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관련]

- 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침입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특별감경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야간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한 경우’로 수정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②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쉬는 사람들도 많은데,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야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청회 방청객 의견)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관련]

③ ‘상당한 장시간’이 손쉽게 인정될 우려가 있는 점, 특별감경인자(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와의 구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긴 경우’로 수정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관련]

④ 특수주거침입으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⑤ 주거신체수색 외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대유형 1의 제3유형에 한함)’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한변호사협회)

⑥ 이 양형인자는 특수주거침입 등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를 다시 가중적 양형인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평가금지원칙 위반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관련]

⑦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이 예상되므로, 실익이 적음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특별감경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 해결 방법

(의견 요지 ① 관련) ⇨ 의견 불일치

㉔ 다수 의견(8인)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와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모두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의견 요지 ①에서 제시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와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시 해당 가능성은 야간과 사람의 미현존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정도에 관한 다른 정의규정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해결할 필요 있음
-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하나만 적용을 받게 됨. 그런데 소수 의견은 특별양형인자의 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양형인자를 두 개로 반영하는 문제가 있음
- 다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수정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다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수정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다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이하 양형기준안과 같음)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다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수정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p>○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p>(이하 생략)</p>	<p>○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다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이하 양형기준안과 같음)</p>
---	---

㉞ 소수 의견(3인) : 특별양형인자의 중복이 예상되는 요소를 별도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안

- 양형기준안 기재 특별감경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 규정 중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이거나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분리함. 또한 양형기준안 기재 특별가중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별도의 특별가중인자의 정의 규정으로 분리함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동시에 해당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 자체가 정의 규정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함
- 소수 의견에 따른 양형인자(정의 규정 포함) 수정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소수 의견에 따른 특별감경인자 수정
<p>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이거나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p>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소수 의견에 따른 특별가중인자 수정
<p>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p>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p>적용되는 경우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적용되는 경우 제외)</p> <p>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실제 사례에서 추출한 양형요소이고, 주거침입범죄의 보호법익, 침해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함
- 야간 범행의 가중처벌은 피해자의 휴식 시간이 더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기능하기 어려운 시간대로서 객관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된 것임

㉕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를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긴 경우’로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③ 관련)

- 주거침입범죄의 보호법익, 침해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은 타당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를 주거신체수색에 한정하거나 아예 삭제할지 여부(의견요지 ④, ⑤, ⑥ 관련)

- 주거침입범죄와 처벌 규정 체계가 유사한 폭력범죄 등에서도 양형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주거침입범죄에서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음
- 실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음에도 특수주거침입등이 아닌 단순 주거침입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이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이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의견요지 ⑦ 관련)

㉢ 다수 의견(9인)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배제하는 방안

-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이 특별양형인자 적용을 배제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기소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에서 낮게 반영하여 우대하는 결과가 됨
- ① 살인과 사체손괴 행위가 함께 일어난 경우, ② 사문서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③ 사기 범죄에서 문서 위변조 방법을 동원한 경우 등에서 별개의 범죄를 더 중한 범죄(위 예에서 ①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인 '사체손괴'로, ②는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인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로, ③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각각 반영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쟁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이 타당
- 다수 의견에 따를 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음 문구를 삽입함

※ 주거침입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㉞ 소수 의견(3인) :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다수 의견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거침입 과정에서 행사된 해당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일 뿐임. 만약 해당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범죄의 양형기준이 추후 수정되어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될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배제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 중 하나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도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의 정의 규정 중 하나인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도 ‘(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각 그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처럼 다수범죄가 되거나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에 관한 양형인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른 특별양형인자를 규정하는 방식임
- 소수 의견에 따를 때 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소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수정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생략)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기준안과 같음)

<p>-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p> <p>(이하 생략)</p>	<p>-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 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p> <p>(이하 양형기준안과 같음)</p>
---	--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 의견 요지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및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관련]

①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및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는 해당 범죄가 성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고, ‘증오’ 의 원인을 ‘종교, 국적, 장애, 성적지향 등’ 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②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는 그 자체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해야 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③ 기소되지 않은 범죄 목적을 인정하여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양형에서 가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다른 예시(성적 목적, 스토킹 등)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는 제외함이 바람직함 (대한변호사협회)

[일반양형인자로 조정]

④ 주거침입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보호법익 및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너무 쉽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가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임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정의 규정 추가]

⑤ 노약자나 여성 등의 1인 가구임을 알면서 이러한 취약점을 노리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의 하나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야간에 계속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우 등을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김종구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및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해당 범죄가 성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증오’의 원인을 ‘종교, 국적,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구체화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관련)

○ 성범죄만을 달리 취급하여 별도의 형량범위가 권고되도록 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해당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조정되므로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목적 범죄의 불법성의 차이를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음

○ ‘증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한정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일부 예시할 경우 오히려 양형기준이 난삽해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함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그 자체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돌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범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성적 목적, 스토킹, 보복, 증오감 등)도 인정되는 경우 이미 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여 지나치게 가중된 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위상을 내

리거나 아예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의견 요지 ③, ④ 관련)

- 주거침입범죄의 특징(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음), 양형실무(상당수의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실시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㉔ 노약자나 여성이 1인 가구임을 알면서 범행한 경우나 야간에 피해자를 계속 추적한 경우 등을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의견 요지 ⑤ 관련)

- 폭력범죄 등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달리,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상정할 수 있기는 하나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데 주된 불법성이 있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구별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달리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만 주거에 현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사례는 대부분 범죄 목적 주거침입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 없음
- 현행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하나로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야간에 계속 피해자를 추적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 인자로 규정할 필요 없음

다. 일반감경인자

(1) 의견 요지

소극 가담의 정의 규정을 '~ 경우는 제외한다' 에서 '~ 경우는 소극적 가담으로 보지 않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로 변경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 규정 역시 '~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로 수정 (대한변호사협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정의규정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라. 일반가중인자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가) 의견 요지

양형기준안에서는 대유형 1(일반적 기준)과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공통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를 일반가중인자로 두고 있는데,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 등)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청회 최익구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의견 불일치

- ㉠ 다수 의견(7인) :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일반가중인자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삭제
- 대유형 2에는 특수주거침입,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구성요건 자체에서 이미 가중되어 있어 별도의 형량범위를 적용하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다시 가중요소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폭력범죄, 손괴범죄 등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가중적 구성요건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일반 가중인자에서 삭제하여 규정함

㉔ 소수 의견(3인)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

-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는 이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유지되어야 함

(2) 계획적인 범행

(가) 의견 요지

계획적인 범행'의 정의규정에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① 유형)'를 추가하여야 함 (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①항에서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계획적인 범행의 정의규정에 추가할 필요는 없음

Ⅲ.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가. 설정대상 환경관계법

(1) 의견 요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 위반 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정남순 변호사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의 위험성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 관련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위 각 법령 위반 범죄에는 전형적인 환경범죄 이외에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상 범죄, 환각물질흡입에 관한 범죄, 허위 표시·광고에 관한 범죄 등 환경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각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간 내에 양형기준 설정이 곤란한 점 등 고려할 때, 향후 화학물질 관련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나. 설정대상 행위

(1) 의견 요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 조작 또는 허위 측정, 수질원격감시체계 조작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범죄로 인한 오염 상태의 제거, 추가 오염 발생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행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은 오염 상태의 지속을 허용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측정조작행위, 행정명령 위반행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안 설정 과정에서 위 행위 중 일부를 포함하려 하였으나, 양형기준안 의결 시 이번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 이러한 결정을 수정할 사정 변경은 없음

다.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 부분 기재

(1) 의견 요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은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를 처벌규정만 명시하였는데, 다른 범죄 양형기준은 ① 처벌규정만 명시하거나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모두 명시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안 적용범위(표지) 부분에서 처벌규정과 금지규정 모두 기재하고 있고, 유형의 정의 부분에 구성요건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는 없음

2. 권고 형량범위

가. 의견 요지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하여, 각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을 포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안 의결 시 양형통계와 법정형을 적절히 반영하여 설정한 것임
 -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조정할 경우 각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감안하면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할 경우,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은 6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3년9월,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은 3년,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는 2년3월로 상한이 높아져 법정형 상한과 거의 비슷하게 됨

3.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1)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가) 의견 요지

①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부분 요건을 강화하여,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오염방지 시설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임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토론)

② 환경오염은 현재 과학수준으로 오염의 범위와 정도, 그 인과관계 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를 적용할 때 법령상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정하여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일부 정의 규정 수정, 나머지는 양형기준
안 유지(의견 일치)

㉔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를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로 수정 (의견 요지 ① 관련)

- 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정의 규정을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㉕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② 관련)

-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가 환경범죄의 기본 범행태양이므로,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모두 이 특별양형인자 적용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이 특별양형인자는 적용되는 행위가 없게 될 것임

(2)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의견 요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 배출행위, 중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이 중대한 경우에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환경범죄의 경우 공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다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이 양형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어 기본영역 또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권고됨

(3)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 의견 요지

- ① 환경범죄의 특성(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사안 많고, 광범위한 다수에게 피해 초래)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조절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둬야 타당함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 ② 환경범죄의 경우 오염 피해의 공익적 위해성이 강하고 이후 추가 피해는 막기 어려움. 실제 예견가능성 농후함에도 미필적 고의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 가능하므로, 이 양형인자는 삭제함이 바람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환경범죄 역시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비하여 행위불법이 가볍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다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미신고 배출장치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장을 인수하여 조업을 계속한 사례,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이 유실되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환경범죄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개별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가 유무죄 및 양형심리를 통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충분

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임)

(4)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 의견 요지

-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외)를 참조하여, 자수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② ‘자수’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자수,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안 유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 적인 개시’는 문구 수정(의견 일치)

- 기존 양형기준에서 자수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어 제외사유를 정한 예는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일수록 오히려 적발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수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자수는 특별감경인자(행위자)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등 다른 특별가중인자(행위)가 인정되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함
- 자수가 인정되는 단계를 지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밝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그 차이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조직

적 범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사수신 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조직적 범죄에서만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음과의 균형상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함

양형기준안	수정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5)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 의견 요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을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야기하지 않은,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 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안 표현을 유지함

나. 특별가중인자

- (1)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지정폐기물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환경보호지역’ 등 범행 결과의 중대성 관련 양형인자의 수정

(가) 의견 요지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의 정의규정 요건 수정]

- ①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와 관련하여, 입증의 곤란함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토론)

②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대한 결과 불법을 요구하는 것임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③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는 침해의 법익이 달라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환경범죄의 특수성상 중대한 환경오염의 발생 여부가 범죄 적발 시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오염물질의 장기간 배출로 인해 중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를 정의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범행 결과의 중대성 관련 유사 성격 양형인자의 포섭]

④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양형요소가 별개의 양형인자로 세분되어 특별가중인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음. 대표적으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는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가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항과 ㉢항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와 별도의 양형인자로 구분하다 보니,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으로서 실제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안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두 개 존재하여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큰 경우'와 같이 양형인자표에 하나의 특별가중인자를 두고 그 정의규정에 ㉡항과 ㉢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포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나머지 네 개의 대유형에서도 마찬가지임 (각급 법원)

[물환경 범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추가]

⑤ 대유형3(물환경 범죄)의 특별가중요소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를 추가하여야 함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범행 결과의 중대성 관련 유사 성격 양형 인자의 포섭할 필요에 관하여 의견 일치, 정의 규정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포함할지는 의견 불일치

○ 양형기준안에 의할 때 지정 폐기물에 관한 범행으로서 중대

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안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여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범행 결과의 중대성 관련 유사 성격양형인자를 포섭할 필요는 있음

-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와 같이,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함(다만, 물환경 범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된 3, 4소유형에서는 이를 다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없음)
- 정의 규정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포함할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㉔ 다수 의견(9인) : 정의 규정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포함함

- 특별감경인자인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와 비교할 때,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의 정의는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함
- 환경범죄의 특성(침해의 간접성, 전파성, 완만성) 및 보호법익(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재 또는 환경인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수정할 필요 있음
- 다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1)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대유형 1)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대유형 4) 제2조 제4호["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 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²⁾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형)²⁾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㉔ 소수 의견(3인) : 정의 규정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함

- 실제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이미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설령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표현은 어색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려움
- 소수 의견에 따른 정의 규정

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대기환경 범죄(대유형 2) 중 1, 2유형(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과 같이, 물환경 범죄 중 1, 2유형(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의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한 경우
- (이하 다수 의견의 정의 규정과 동일함)

(2)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의견 요지

- ① 환경범죄의 성격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로 규정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등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② 첨단시설이 아닌 단순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무단방류, 기존 시설에서 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을 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시킴이 타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안은 환경범죄에서의 범행 수단(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 측면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주관적 측면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나아가 범행 결과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위 의견에 의할 때, 사전에 계획하여 대규모로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이미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지나치게 가중된 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첨단시설이 아닌 경우 등에도 정의규정의 다른 예시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일반감경인자

(1)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가) 의견 요지

시정조치를 '완료'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시' 하기만 한 경우 환경오염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게 되어 부당함. 따라서 '단속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토론)

(나) 논의 결과 ⇨ 의견 불일치

㉔ 다수 의견(7인) : 정의 규정 수정

- 환경오염 피해가 복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양형인자를 '단속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㉕ 소수 의견(4인) : 양형기준안 유지

- 시정조치 완료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감경인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감경인자에 그치므로 시정조치를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다양한 환경오염의 양상 및 시정조치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 또한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규정함은 무리가 있음

(2) 비용 공탁

(가) 의견 요지

실질적인 오염제거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를 감경인자로 추가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공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공탁의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움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 의견 요지

-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 규정인 ‘~ 경우는 제외한다’를 ‘~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로 수정 (대한변호사협회)
-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제외 요건 관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외에 중대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정도의 대량 무단배출, 고농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경우에도 제외함이 타당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표현을 수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관련)

- 기존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정의 규정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형기준안을 유지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제외 요건에 중대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정도의 대량 무단배출, 고농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경우를 추가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둔 것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만한 초범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임. 중대한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 등 결과불법의 가중사유는 이와 다른 국면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4) 진지한 반성

(가) 의견 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의 내심을 일반감정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환경범죄는 그 피해를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범죄의 결과를 회복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기 어려우므로, 삭제 필요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다수의 범죄에서 일반감정인자로 두고 있음. 각 재판부에서 적절한 양형심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임
- 특별양형인자와 달리 일반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함

라. 일반가중인자

(1)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가) 의견 요지

①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가축분뇨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므로, 일반가중인자인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토론)

② 어느 정도의 양 또는 기간이 상당하거나 장기인지 대략적인 기준 혹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할지 여부(의견 요지 ① 관련)

- 환경관계법령상 배출량이나 범행기간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배출물질의 종류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까지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또한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또는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함

㉔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배출량이나 범행기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으나, 기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정한 예는 없음
-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양형심리를 통해 배출량의 상당 여부, 범행기간의 장기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

(2)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가) 의견 요지

① 환경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유혹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상향할 필요 있음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정남순 변호사 토론)

② 어느 정도의 금액이 다액인지 대략적인 기준 혹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류필무 담당관, 정남순 변호사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㉔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상향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① 관련)

- 환경범죄의 경우 이득액의 규모가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는 범죄의 부산물의 성격이 크므로 이득액의 규모를 특별양형인자로까지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또한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또는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득액이 다액인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임

㉕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지 여부(의견 요지 ② 관련)

- 이득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으나, 기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정한 예는 없음
-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양형심리를 통해 이득액의 다액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집행유예 기준

가.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1) 의견 요지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를 집행유예 불허사유로 두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두어야 함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기존 양형기준에서 특정 사유를 집행유예 불허사유로 정한 예는 없음
- 개별 사안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의견 요지

- ①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② 현재 과학수준, 환경범죄에 대한 형벌의 위하효과 등 고려할 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③ 장기·계속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양형인자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주요 또는 일반 참작사유로 반영되어 있거나 양형인자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음
- 개별 사안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1) 의견 요지

환경범죄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사개시의 단서로서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를 일반공정사유가 아닌 주요공정사유로 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수정(의견 일치)

- 자수, 내부 고발 등을 특별감경인자(행위자)로 반영하고 있는 점, 환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주요공정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다수의 범죄에서 주요공정사유로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양형인자와 동일하게, 조직적 범죄에서만 범행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함

양형기준안	수정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5. 기타

가. 벌금형 기준 설정 등

(1) 의견 요지

- ① 선거범죄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 기준,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공청회 정남순 변호사 토론)
- ② 차후 환경범죄의 특성, 법인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선고사례 외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법정형 범위에서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은 추후 환경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나. 오기 수정

(1) 의견 요지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중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서술 중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건설폐기물법'으로 수정 (대한변호사협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수정(의견 일치)

-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고, 약어표에 따라 '건설폐기물법'으로 표현함
- 한편,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중 '5. 가축분뇨 범죄'의 소유형 서술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약어표에 따라 '가축분뇨법'으로 수정함

IV.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가. 범죄군 설정

(1) 의견 요지

본질적으로 고의범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과실범죄와 함께 묶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나 분류의 문제를 넘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될 때 본 범죄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산업안전보건범죄를 과실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것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이번에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삼은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거나 (제1, 2유형; 도급인 · 사업주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특수한 형태(제3유형;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과실치사상 범죄와 연관성이 높음
- 이처럼 범죄의 성격이 비슷한 유형은 고의범 · 과실범 여부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묶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그렇게 취급한 사례가 있음(교통범죄)

나. 벌금형 양형기준

(1) 의견 요지

실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무부, 공청회 전형배 교수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여부와 범위, 방식은 비단 이 범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 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중장기 과제에 해당함

다.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 의견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다양한 행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명확한 통계와 실증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죄의 중추를 이루는 범죄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종전 판례도 상당수 축적, 분석한 결과, 현행 안을 도출한 것임

라. 유형 추가

(1) 의견 요지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 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와 교사 공모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추정의 요소 또는 가중처벌 요소로 포함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도,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방청객 의견)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위원회는 ① 현실적 제약, ② 빈도, ③ 주된 선고형 등을 고려해서 동일 범죄군에서도 그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대상으로 삼아서 양형기준을 설정해왔고,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별한 것임

마. 유형의 정의

(1) 의견 요지

처벌규정에서 인용한 금지규정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이나, 그 적용법조에서는 「제38조, 제39조」만 적시하였고, 현장실습생에 관한 금지규정을 누락하였으며, 현장실습생 관련 구성요건 또한 준용규정에 맞게 고쳐야 함 (대한변호사협회)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의견 일치)

- 처벌, 금지, 준용규정을 모두 정확히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 있음

제1유형(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도급인이 자신의 현장실습생과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제166조의2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사업주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6조의2 , 제38조 제1, 2, 3항 , 제39조 제1항 , 제166조의2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사업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또는 도급인 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 제38조 제1, 2, 3항 , 제29조 제1항 , 제166조의2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를 저지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2. 형량 범위

가. 권고 형량 과소

(1) 의견 요지

치사 범죄의 기본영역이 징역 1년-2년6월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종전 선고 사례는 징역형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볍다고 비판을 받아와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며, 법정형 상한선이 같은 범죄라도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삼지 아니하는 이상, 그 양형기준과 동일선상에서 설정하는 것은 부당, 예컨대 권고 형량은 하한 1.5배씩 상향, 치사 범죄에서 상한 폐지 **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방청객 의견)**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종전 선고 사례에 대한 비판과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당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종전 법정형 동일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엄한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임

나. 권고 형량 과다

(1) 의견 요지

①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 범위는 현행 과실치사상죄 양형기준과 유사하나, 수정안에서 제시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에 대한 영역별 형량 범위는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 및 고의범인 폭행에 따른 사망 발생 등에 대한 형량 범위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과다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②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 시까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상황인데도,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고, 안전·보건조치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인데도, 안전·보건조치위반 치사의 권고 형량을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그 표본 또한 2015-2019년 총 사고성 사망자 4,714명 중 4.6%에 그치는 217건으로 대표성이 부족하고(제3유형),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임(제1, 2유형) **(한국경영자총협회)**

③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경우, 처벌 위주의 법안은 중소기업 등 산업경영계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사업주의 경우 수감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올리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안전·보건조치위반 치사(7년 ↓)는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5년 ↓)보다 법정형 높은 이상, 권고 형량 범위도 높아야 하고, 그 표본 또한 지난 5년간 모든 징역형 선고 형량으로 대표성이 있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5년 ↓)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향후 더 큰 산업재해의 전조로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아 법정형 동일한 업무상 과실치사(5년 ↓)보다 권고 형량 또한 높이 설정함이 타당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3년 ↓) 또한 같은 취지에서 법정형 더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준할 수준의 권고 형량을 설정한 것임

3. 양형기준 수정안에 기재된 양형인자 관련

가. 특별감경인자

(1)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의견 요지

① 수정안은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 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제시하나,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 고리를 풀고 작업한 것이 자기안전의무의 위반인지, 작업 물량이나 처리속도에 대한 압박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망한 노동자의 사정이나 주장이 조사되거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감경인자로 두는 것은 불합리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② 단지 위험한 장소임을 알고 출입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업과 무관한 장소에 출입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과실을 감경요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시설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에 따른 사고 발생에 반드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고용노동부)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안은 이미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저히」, 「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등 이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음
- 근로자가 사고 발생 장소에 「업무와 관계없이」 출입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상 「산업재해」로 포섭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 범죄도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양형기준 또한 적용할 여지가 없음

(2)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 의견 요지

「본인 책임 없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본인이 야기하지 않은/본인이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으로 수정하면, 일반인이 오해할 여지를 줄일 수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형법은 심신미약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의 임의적 감경을 부정(형법 제 10조 제2, 3항)하는데, 현행 안은 물론 종전 양형기준은 위 원칙과 예외를 간명히 정리한 것임
- 위 의견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자면, 형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을 살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야기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법에서 정한 원칙, 예외 구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복문 구조로 가독성과 이해에도 오히려 부담이 됨

(3) 처벌불원

(가) 의견 요지

「상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밑도는 점에서만 분명할 뿐,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상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완전보상은 민사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한 액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극히 기술적 개념으로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도입하기는 곤란함
- 반면 「상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은 물론 이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까지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문제없이 널리 통용되었음

(4) 내부고발

(가) 의견 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자수」나,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인데, 「내부고발」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은 의문스럽고 오히려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문구 수정 (의견 일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범행 주체인 「사업주」, 「도급인」이 아닌 제3자가 공범으로 가담할 경우, 「내부고발」을 통하여 범행의 예방과 피해 발생,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의 해당 범행에

대한 폭로 행위로서 종전 양형기준에서도 널리 쓰이던 개념
임

- 다만,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조직적 범죄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문구를 변경함 (환경범죄 양형기준과 같은 취지)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나. 특별가중인자

(1)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가) 의견 요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만 설명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대다수 조치의무는 사소해보여도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두 「중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의무위반을 중하다고 간주하면, 그 자체로 이 양형인자에 해당하여, 모든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를 인정하는 셈이 됨
- 이에 이 양형인자는 「대규모 인명피해」와의 직결 가능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두었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어도 포섭할 여지를 남겨둠

(2)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 의견 요지

- ① 건축현장의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인 추락사고의 경우, 추락사고 발생 장소도 다양(가설구조물, 지붕, 개구부, 기타구조물 등)할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도 다양(중앙난간대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설치 미비,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 추락 방지망 미설치 등)함에도 「유사한 사고」를 사고원인이 아닌 사고유형별로 포괄적인 판단 시 대부분의 건설사는 유사한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가중요소가 추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②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① 관련)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종 전과는 아니더라도, 구체적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특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중 처벌 필요성이 큼
-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② 관련) ⇨ **의견 불일치**
- ㉢ 다수 의견(7인)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
- 유사 사고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정의해 두면 오히려 합리적 양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음
- ㉣ 소수 의견(4인) : 정의 규정 신설

- 양형인자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
- 소수 의견에 따른 경우, 정의 규정

○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내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한 경우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정·사고의 원인 또는 위반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이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피고인이 선행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후행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3)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 의견 요지

- ① 원칙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제되는데,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가중되고, 양형기준 역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두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두게 되면, 결국 동일한 양형 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형을 두 번에 걸쳐 가중하는 셈이 됨 (각급 법원)
- ②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요소로 규정할 경우, 중복적인 요소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해당 가중요소 삭제 필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 ③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

(나) 논의 결과 ⇨ 양형인자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 일치)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합범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 수정안에 따르자면, ① 특별가중인자,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이중 평가가 되어 가중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면 해소할 수 있

음

- 한편,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 해설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실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태로 인자를 존속하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전체 권고 형량 하한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행위 태양에 관한 가중인자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가중인자이므로 서로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꼭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따로 존속할 실익이 있음
-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정의해두면 오히려 합리적 양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의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음

(4) 동종 누범

(가) 의견 요지

「동종」이 죄명을 의미하는지, 동일, 유사한 원인을 의미하는 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동종」은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는 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해당 범죄군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왔기에 추가로 정의를 둘 필요성이 낮음

다. 일반감경인자

(1) 보험 가입

(가) 의견 요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의무 가입되므로 제외되어야 함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② 현행 안은 종전 「자동차종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서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변경했으나, 건설공사 발주자는 근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아 근재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건설사는 거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근재보험 가입을 위해 안전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근재보험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현장 안전확보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우려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나) 논의 결과 ⇨ 일부 의견 불일치(불일치 부분은 별도 표시)

- ㉠ 의무 보험은 양형인자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① 관련) ⇨ **의견 불일치**
- ㉡ 다수 의견(7인) : 의무 보험은 감경인자 적용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처럼 보험 가입을 간주하거나, 보험 가입의 무가 있는 경우까지 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 수정함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u>자동차종합보험 가입</u> - <u>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고용보험</u>

<p>-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p> <p>-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p><u>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u>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거나 가입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	--

㉞ 소수 의견(4인)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

-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당시, 의무 보험도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수정할 사정 변경이 없음
- 산재보험가입을 일반감경인자로 보는 것은 가입의 자발성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둔 것임

㉟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보험도 포함할지 여부 (의견 요지 ② 관련)

-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손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보상하는 보험, 공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 의견 요지

국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단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다」에서 「범행한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야 함 (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본문에서 「의미한다」, 단서에서 「제외한다」는 상호 대응 표현임
- 위 의견이 제시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중부정 구조로서 가독성과 이해에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

라. 일반가중인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1) 의견 요지

현행의 가중요인에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증거은폐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사고은폐 및 사고조사 방해」 등을 별도의 처벌조항을 제정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고은폐와 사고조사 방해」로 폭을 넓히고, 일반양형인자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사고은폐, 사고조사 방해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어려워 「증거은폐」라는 법적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
- 증거은폐 나아가 사고은폐를 특별가중인자로까지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형법이 자기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우리 법체계와 상충할 여지가 있음

4. 양형기준 수정안에 기재되지 않은 양형인자 추가 관련

가. 감경인자

(1) 행위 불법의 경중

(가) 의견 요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등 행위 불법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맞게 양형기준의 수정도 필요한데, 즉 수급인에게도 방지의무가 있지만, 도급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도급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위험이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도급인과 수급인, 대표이사와 관리자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거나, 행위 불법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현행 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 예컨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참작 가능

(2) 경미한 상해

(가) 의견 요지

현행 양형기준 중 살인, 강도, 폭력, 방화, 성매매 등 흉악범죄를 포함한 27개의 양형기준에서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와 유사한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경미한 상해」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며, 종전 과실치사상 양형기준 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유사한 사고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로 나누어 가중요소 개수는 확대하는 반면, 「경미한 상해」를 삭제하여 감경요소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제1, 2유형)은 상해 여부를 불문하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제3유형)는 피해자 사망을 전제로 삼은 이상, 어느 쪽도 경미한 상해

를 양형인자로 삼을 여지가 없음

(3) 상당 금액 공탁

(가) 의견 요지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금액이 손해배상금액에 육박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합의 사실에 준하는 감경인자로 고려될 여지가 있고, 고의범 성격의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등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과실범 성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도 감경인자에 포함된 이상, 산업안전보건 범죄만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한국경영자총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산업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피해 유무와 정도를 불문하고 성립하기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살인 등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렬되어 그에 준할 정도의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는 현행 안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아 처벌불원에 준하는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음

(4) 피해자 과실

(가) 의견 요지

산업안전보건범죄는 대부분 행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감경인자에서 피해자 과실요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하였는데, 피해자 과실의 경중을 살펴 행위자의 양형에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합당함
(한국경영자총협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종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실이 있는 경우」는 현행 안에서도 그 내용 모두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흡수하여 존속하고 있음

- 위 두 인자는 피고인 이외 사정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 성격이 서로 유사하고, 양형 과정에서도 분리, 취급할 만한 논리 필연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통합한 것임

(5)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가) 의견 요지

감경인자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 여부가 반영될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끌어내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이고, 더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 이상, 이미 「실패한」 노력을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부당함

(6) 말단관리자

(가) 의견 요지

실제로는 작업을 같이하는 노동자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조치의 직접 수행담당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으며, 인력은 적정하게 배정하지 않고 위험작업의 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기업이 인력과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실질적 권한도 없는 경우에는 말단관리자나 노동자가 사고 발생에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감경요인의 양형인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해야 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전형배 교수 토론, 공청회 방청객 의견)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말단관리자라고 해도 사고 발생에 관여한 정도는 천차만별

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경인자로 삼으면,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말단관리자로서 권한이 제한되어 사고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구체적 형량 결정에 참작할 수 있음

나. 가중인자

(1) 피해자(유족 포함)의 엄벌요구가 있는 경우

(가) 의견 요지

기존 판례에서 부정적 양형인자로 고려하였고, 이와 반대되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특별감경인자임을 고려하면, 가중인자로 두는 것이 타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대부분 범죄에서 기본적인 상황이므로, 그 자체는 특별가중인자로 삼을 수는 없음
- 피해자가 특히 엄벌을 요구할 경우, 이 점은 구체적 형량 범위를 정할 때 법관이 다른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2) 위험에 대한 개선요구를 무시한 경우 /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시정조치 불이행

(가) 의견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요구를 안전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수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거나, 행정기관의 점검, 조사, 감독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가 다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이근우 교수 토론, 공청회 방청객 의견)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안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특별가중인자에 포섭할 수 있음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중복 위험 있고, 개선요구의 방식 등을 객관화하기 어려움

(3) 공기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 금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반영,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원 하청 합동점검 등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 의견 요지

산업재해 사망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의 기본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예산도 지급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하도급 계약이 횡행하므로, 도급인의 책임 의무위반 여부가 중요한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청회 방청객 의견)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가중인자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정도가 중하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특별가중인자에 포섭할 수 있음
-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무위반을 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될 우려 있음

5. 기타(양형인자의 정의 수정)

- 양형인자의 정의 중 과실치사상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그 취

지를 괄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의 해당 부분 제목 수정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
○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과실치사상 범죄)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과실치사상 범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과실치사상 범죄)

6. 집행유예 기준

- 자수, 내부 고발 등을 특별감경인자(행위자)로 반영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주요긍정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다수의 범죄에서 주요긍정사유로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양형인자와 동일하게, 조직적 범죄에서만 범행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함

양형기준 수정안	수정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V. 향후 일정

- 일시 : 2021. 5. 24.(월) 15:30 ~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선정